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398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이정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이하 'D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2013. 10. 5.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로 등 신용대출을 이용해왔는데, 2014년경부터 그 이용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이에 D카드는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C는 D카드에 2,719,878원 및 그 중 2,610,389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위 법원 2014차전4729호), 이는 2014. 8. 8. 확정되었다.나. D카드는 2015. 6. 23.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이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12.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분 3/11), 자녀들인 F, G, H, C(상속분 각각 2/11)가 있다.

라. 피고, C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9. 2. 1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9. 2. 26. 접수 제1601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C는 2016. 2. 2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수시로 C의 재산 내역 등을 조회하여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2. 26.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2019. 2. 26.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과 함께 증거서류로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3회에 걸친 이 법원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서면만이 진술간주 되었고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제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와 사해행위 성립 등(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와 및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C는 2019. 2. 12.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9. 10.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9. 2.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2/11지분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9. 2. 26.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6. 3. 14.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망인(이후 2019. 5. 1. 피고로 변경되었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9. 2. 12. 무렵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33,818,181원이고(=1억 8,600만 원 ×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9,700만 원으로 그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17,636,363원(=9,700만 원 × 2/11)인바,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위 1)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12.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와 악의도 추정된다.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제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예현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L에 있는 M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남양주시 O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8층 아파트

1층 424.28㎡

2~18층 각 405.24㎡

지층 419.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남양주시 L 대 222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P호 철근콘크리트조 84.95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299분의 50.370 끝.

